

## 롤즈와 평등주의: 경제적 혜택의 분배에 관한 철학적 논의의 한 사례\*

주 동 료

(한림대학교 철학과)

### 1. 평등주의자 롤즈와 그 이면

롤즈 자신이나 그의 추종자들은 자유와 평등의 두 이념들을 조화시킨 것이 그의 정의론의 최대의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러한 평가의 근거들을 짐작할 수 있다. 우선, 롤즈 정의론의 제1원칙이 시민적 자유들의 완전한 평등<sup>1)</sup>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로, 사회, 경제적 자원들의 분배에 있어서 롤즈는 그것들이 평등한 상태를(가설적이지만) “원초적 분배상태”라고 보고, 그 이후의 변화가 옳은지를 평가하는 “수준점(benchmark)”이라

\* 이 논문은 2004년도 한림대학교 지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결과물임.

1) 이 글에서 ‘평등(equal)한 분배’는 일차적으로 ‘동일한(identical) 양의 분배’를 지칭한다. 글의 후반부에서 일부 평등주의자들이 옹호하는 바 동일하지는 않지만 부당한 차이가 제거된 분배적 상태가 역시 ‘평등한 분배’로 지칭될 것인데 문맥적으로 혼동이 없도록 할 것이다.

고 간주한다.<sup>2)</sup> 이는 평등한 상태를 기준으로 하고 그 상태로부터의 모든 이탈들이 규범적으로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평등주의의 전형적 주장인 것처럼 보인다. 마지막으로, 롤즈의 둘째 원칙의 마지막 부분인 “차등의 원칙(the Difference Principle)”에 의하면 이 원초적 평등의 상태로부터 이탈하는 경우 불평등은 모든 이들에게 혜택이 갈 경우에만, 특히 사회적으로 최소수혜자의 자원상태가 진전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sup>3)</sup> 비록 불평등을 허용하기는 하지만 그 조건으로서 모든 이들이 이 불평등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것, 특히 최소수혜자의 처지가 극대화되는 것을 노린다는 점에서 롤즈주의자들은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평등주의의 형태라고 주장할 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평등주의자’ 롤즈의 상에 대한 많은 비판들이 있어 왔다. 이 글은 그 비판들 중 하나를 다룬다. 그 비판은 롤즈가 평등주의를 표방한다는 사실이 공허하다는 것으로, 롤즈는 사실상 ‘동일한’ 분배로부터의 이탈을 허용할 뿐 아니라 그 어떤 기준에 따른 평등 분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생산능력에서 애초에 우위를 점한 개인들이 롤즈의 차등의 원칙을 형식적으로 만족

2) 롤즈, *A Theory of Justice*, 62-65/54-56(71년판/99년판의 면수).

3) 롤즈의 텍스트는 과연 최소수혜자들에게 보탬이 되는 불평등만을 허용하는지, 보탬이 되지 않는 않지만 그들에게 해를 주지 않는 불평등도 허용하는지에 관해서 양면성을 보이고 있다(이에 대한 해석적 논의로는 Parfit, “Equality or Priority?,” 115-121; Cohen, “Incentives,” 334/주 6을 참조할 것). 대체로 허용되는 불평등에 대한 일반적 논의가 전자의 편을 들고 있지만, 그가 차등의 원칙에 대한 세부적 묘사로서 제시하는 ‘사전편찬식’ 최소수혜자 우선원칙(*leximin*)에 의하면 최소수혜자들의 처지가 극대화된 이후에는 다른 집단의 처지 상승 — 결과적인 불평등 — 이 허용된다(따라서 위의 두 논평자들도 이 글의 필자도 롤즈가 최소수혜자에게 더 이상 득이 되지 않는 일부 불평등을 결국 허용한다고 본다). 문제는 최소수혜자의 처지가 극대화된 지점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이다. 그것이 그들 처지의 더 이상의 상승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지점인지 아니면 더 커다란 혜택과 재능을 가진 사람들의 주관적인 협상(*bargaining*)과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 지점인지가 문제의 관건이며, 이 차이가 이 논문의 주요 주제이다.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제시한 유인들(incentives)을 허용하여 평등주의의 이상을 저버렸다는 주장이다. 이는 차등의 원칙이 표면적으로는 최소수혜자를 우대하고 평등을 지향하는 듯하지만, 그 원칙에 대한 롤즈 자신의 해석이 ‘부당한’ 혜택의 차이를 줄이는 독자적 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Oxford의 정치철학자 G. A. Cohen에 의해 첨예하게 제시되었다. 필자가 보기에는 이 비판이 롤즈에 대한 평등으로부터의 비판의 핵심이다.<sup>4)</sup> 그리고 필자는 그 비판이 롤즈의 기본적 정의 원칙을 유지한 채 그 원칙의 적용방식에 대한 비판(“내적 비판”)으로 제시되었을 경우 상당한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내적 비판을 넘어서 암시가 존재하지만 그 경우 정의 이념 자체에 대한 롤즈와 비롤즈적 틀의 대조로서, 그 승패를 가늠하는 것은 윤리, 정치, 경제적 규범 체계상의 대규모적 논의를 수반해야 할 것이다.

---

4) 이 글에서 논의되지 않지만 평등과 관련된 두 가지 다른 롤즈 비판의 내용: (1) 정의롭게(따라서 부분적으로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하는 대상물 자원이 개인의 활동/상태에 미치는 효과(복지 혹은 Sen적 의미에서 “기능할 수 있는 능력”)가 아니라 자원 자체에 두었다는 비판; (2) 평등주의적 분배도 단순히 동일한 분배가 아니라 규범적으로 근거가 있는 기준에 의한 분배 — 그러한 기준을 동일하게 만족한 사람들에 대한 동일한 분배 — 를 지향해야 하는데 롤즈에 있어서 그러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비판. 롤즈가 응분(desert)의 개념을 너무 성급하게 폐기했다는 비판과 개인적 책임을 분배에서 감안하는데 실패했다는 비판이 이와 관련된다. 전자(“egalitarian currency”의 문제)에 관해서는 Sen, *Inequality Reexamined*(특히 5장), Ameson의 글들, Cohen, “On the Currency of Egalitarian Justice”를, 후자에 관해서는 Moriarty, Mandle의 글들, 그리고 Ameson, “Rawls, Responsibility, and Distributive Justice” 참조. 필자는 이 비판들이 중요한 논점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롤즈 내에서 해결이 가능하거나 부분적으로 이 글에서 다룰 비판으로 귀결된다고 생각한다.

## 2. 경제적 유인(incentives)에 따른 불평등 확대의 문제: Cohen의 내부적 비판(internal criticism)

롤즈에 의하면 앞선 재능에 의해 산출된 혜택을 재능의 소유자가 다 차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자연적 재능(그리고 재능 개발의 여건)의 차이는 ‘도덕적’으로 우연적인 요소라서, 그 재능의 차이는(비유적인 의미이지만) ‘공통의 자산(common asset)’으로 취급되어야 하며 그로부터의 이득은 모든 이에게 보탬이 되어야 한다.(*Theory*, 101/87) 이 과정에서 재능의 소유자가 그 재능을 발휘하여(최소한 동일한 노력으로 더 많이 산출하던가 혹은 더 많은 재능과 노력을 기울여서) 모두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유인(incentives)으로서 재능에 의해 산출된 이득의 일부를 그에게 줄 수 있다. 롤즈의 최소수혜자 우선의 원칙 하에서 그 유인이 최소수혜자의 처지 상충에 ‘필요하다면’ 그 유인의 지급과 결과적 불평등은 허용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justice)가 요구하는 바가 될 것이다. 부정의는 불평등이 아니라 “단지 모두에게 혜택이 되지 않는 불평등을 말할 뿐이다.”<sup>5)</sup>

롤즈에게서 허용되는 유인/불평등에 대한 한계가 존재하는가? 보다 정확히는 차등의 원칙 자체가 그러한 한계를 제시하는가? 롤즈의 공식적인 대답은

---

5) *Theory*, 62/54. 따라서 롤즈에 의하면 분배의 수준점인 평등으로부터 차등의 원칙이 허용하는 불평등으로의 이행은 정의로부터 효율성으로의 이행 혹은 정의와 효율성이 타협한 것이 아니라 정의가 실행되는 과정이다. 정의론 내에서 롤즈는 수준점인 평등으로부터 강한 파레토 개선(Pareto improvement: 모두의 처지가 나아짐)을 수용했으며, 수혜자가 최저층이라는 단서 하에서 약한 파레토 개선(일부의 처지가 나아지고 나빠진 사람이 없음)도 수용한다(즉 롤즈의 두 원칙들이 지켜지는 한에서 정의로운 구조는 효율적이다. 물론 효율적인 구조들이 롤즈적 의미에서 다 정의로운 것은 아니지만. *Theory*, 66-80/58-70). 아래에서 소개될 Cohen의 비판과 다른 측면에서 파레토 효율성에 의한 불평등 허용을 비판하는 사례로서 Shaw의 글들을 참조할 것.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정의의 선행 원칙들이 준수되고 최소수혜자의 처지가 상승한다는 전제하에서는 그 어떤 크기의 유인/불평등이 발생해도 허용되어야 한다: “차등의 원칙은 더 혜택을 받은 집단과 덜 받은 집단에 할당된 몫들의 비율(ratio)이 머물러야 하는 확정적 한계들을 명시하지 않는다. 사실상 우리는 그러한 한계들을 설정해야한다는 요구를 피하고자 하는데 순수한 배경적 절차적 정의의 결과로서 그 비율은 어디에서 멈추든지 허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Justice as Fairness(JF)*, (68) 롤즈는 집단들 사이의 격차가 “부정적으로 보이는 범위”에 떨어지지 않기를 “희망”하고 그 격차가 지속적으로 불균형하게 커지는 가능성이 단지 “추상적인” 것이라고 짐작하지만,<sup>6)</sup> 그러한 희망과 짐작의 근거는 차등의 원칙이 아니다(우리는 3.2에서 그 근거를 보게 될 것이다).

롤즈의 정의론 내에서 유인이 발생하는 불평등에 대한 최근의 가장 선명한 비판으로서 Cohen의 견해를 이 절에서 보고, 롤즈 옹호자들의 대응과<sup>7)</sup> (대체

6) *ibid.*, *Theory*, 157/136. 일부 논평자들은 롤즈의 유인(incentives)이 재능 있는 자들의 재능 발휘를 위해 엄격히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는 수준에 머무른다는 주장을 한다(Smith 참조). 이것이 옳은 해석이라면 롤즈의 견해와 Cohen의 비판에 담긴 입장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 주장이 롤즈에 대한 합당한 해석이 아니라고 본다. 우선 이 주장은(차등의 원칙에 의해) 허용되는 유인/불평등의 범위에 대해서 위에서 예시된 롤즈의 공식적 견해에 배치된다. 둘째로 그 주장이 근거한 롤즈의 문구들은 유인들이 재능 개발과 발휘를 위해 엄격히 필요한 비용을 포함해야 하며, 반드시 그것과 일치할 필요는 없음을 시사한다. 예로 다음을 보라: “만약에, 예를 들어 이 불평등이 다양한 유인들을 내놓아서 더 생산적 [재능이 있는 자들의] 노력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한다면, 원초적 입장에 있는 개인은 그것들을 [재능] 단련을 위한 비용을 포괄하고(cover) 효율적인 일의 수행을 독려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Theory*, 151(필자의 강조; 이 부분은 개정판에서 누락되었지만 비슷한 문구가 *JF* 77에 나와 있음).

7) 이 글에서 언급된 “롤즈 옹호자들”이란 Cohen의 롤즈 비판에 맞서서 롤즈의 원래 틀을 옹호하는 사람들이며, 롤즈의 모든 혹은 대부분의 주장을 다 수용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것은 아니다. 롤즈 vs. Cohen에서 롤즈 옹호의 대표적

로 Cohen의 비판을 지지하는) 필자의 논평이 다음 절에서 제시될 것이다.

Cohen의 비판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sup>8)</sup> (1) 모든 사회적 일차적 선들이 동등하게 분배된 롤즈적인 정의의 “수준점”인 애초의 평등상태(D1)가 다음의 상태로 이행할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재능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일하지만 더 커다란 그들의 생산력으로부터 나온 추가적 산출들이 재분배되어서 더 높은 수준에서 평등이 회복된 상태(D3).<sup>9)</sup> Cohen의 주장은, 재능있는 자들이 자신의 재능을 발동하기 위해서 유인들을 요구하고 (재능이 없는) 타인들에게 확장된 산출의 상대적으로 적은 양만을 갖게 하여(“trickle-down effect”) 결과적으로 불평등한 분배를 초래하는 상태(D2)보다 D3이 더 우월하다는 것이다. 그 우월성은 롤즈적인 관점에서 해명될 수 있는데 D3과 D2는 파레토-비교 불가능하지만<sup>10)</sup> 전자에서(재능 없는) 최소수혜자의 처지는 후자보다 높아서 롤즈의 차등의 원칙이 더 잘 충족되기 때문이다. (2) 사실상 대개의 현실적 경우들에서 D3은 “객관적으로 실행가능(feasible)”하다. 재능있는 자들의 더 커다란 생산력이 활용될 때 D3 대신에 D2가 나타나는 이유는 그들이 재능이 없는 집단에게(세금 등을 통해) 혜택을 더 많이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impossible)”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기(unwilling)” 때문이다. (3) 따라서 만약 재능있는 자가 차등의 원칙과, (애초의 동등한 상태인) D1을 분배적 정의의 ‘수준점’으로 여기게 했던 롤즈적 이유(사회적 지위와 자연적 재능의 차이의 도덕적 임의성 혹은 무관성<sup>11)</sup>)를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는 D3을 향해 나아갈

---

사례는 Estlund, Pogge, Smith, Julius, Daniels, Williams, Meckled-Garcia이다. 반면에 Cohen의 비판에 우호적인 사람들은 Carens, Wilkinson, Murphy 정도임.

8) “Incentives, Inequality, and Community,” “The Pareto Argument for Inequality,” *If You're an Egalitarian, How Come You're So Rich?*

9) 아래에서 보겠지만 D3의 ‘평등한’ 상태는 ‘동등한’ 분배상태가 아닐 수 있다.

10) 두 상태에서 재능 있는 자와 없는 자의 혜택 수준은 반대 방향으로 엇갈리기 때문이다.

11) 롤즈 자신은 동등분배를 정의평가의 수준점으로 간주하는 근거로서 ‘도덕적 임의성’ 명제를 명시적으로 내세우지는 않는다. 그러나 일부 롤즈 옹호/해석

동기를 갖게 될 것이다. 그 최적의 구현을 위해서, 롤즈의 정의론은 한 사회에서(모든 사람에게, 하지만 특별히 재능있는 집단에게) 확산되어 생산 활동의 적절한 수준을 유도하고 D3의 재분배 수준에 동참하게 하는 동기적, 심정적 바탕, Cohen이 일컫는바 “평등주의적 에토스(egalitarian ethos)”가 필요하다. (4) 이러한 이유로 정의의 일차적 주제(primary subject), 즉 그것을 통해 정의가 이행되는 합당한 주체(agency)이자 정의와 관련된 평가의 적절한 대상이 사회의 기본 구조(정치적, 법적, 경제적 활동을 관장하는 공적 기구들과 기타 사회적 혜택과 부담을 할당하는 데 중요한 사회적 제도들)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롤즈의 명제는 잘못된 것이다.

Cohen의 비판에 대한 세 가지 배경적 사실이 지적되어야 하겠다. 우선적으로 이 비판이 처음 선보인 Cohen의 텍스트들은 이것이 내적 비판(internal criticism)으로 제시되었음을 강하게 암시한다: “내 편에서 보자면 나는 차등의 원칙을 수용한다 … 그러나 나는 재능있는 사람들에게 유인으로 제공된 특별 수당을 옹호하기 위해 차등 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문제 삼는다.” (“Incentives,” 336) 다른 말로 하자면, Cohen은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테스트로서 차등의 원칙에 “시비를 걸지 않지만 … 어떤 불평등이 그 테스트를 통과하고, 이에 따라 얼마나 많은 불평등이 그 테스트를 통과하는지의 문제에 있어서는 롤즈와 날 카롭게 대립한다.” (*If You're an Egalitarian*, 124) Cohen에 의하면 대다수의 경우에 D2에 머무르지 않고 D3을 향하게 추궁하는 것은 다름 아닌 차등의 원칙이다.<sup>12)</sup>

---

자들은 이 명제를 통해 수준적 상태를 옹호하고 있으며(이에 대해서는 Cohen의 “Incentives” 참조), 롤즈 자신의 응분 개념에 대한 비판과 ‘공통자산’으로서의 재능 개념을 원용하면 롤즈도 이 노선을 채택한다고 생각할 만하다. 앞으로 보겠지만, 이 해석의 합당성 여부를 떠나 롤즈가 독립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재능에 대한 도덕적 임의성 명제 자체로 Cohen은 D3의 우월성을 뒷받침할 수 있다.

- 12) 우리는 마지막 절에서 Cohen과 롤즈의 대립을 내적 분란으로 보는 것과 다른 시각을 엿보게 될 것이다.

둘째로 Cohen은, 재능있는 자의 노동이 그들에게 야기한 ‘특수한 부담 (special burdens)’을 보상한다는 의미에서의 유인을 거부하지는 않는다. 천부적 재능이라 해도 그것을 생산에 투여하려고 보진, 단련, 개발하는 비용이 존재할 경우, 또 재능을 작동하여 남보다 힘든 일을 수행하면서 기울여진 노력의 강도가 재능 소유자의 복지 수준을 재능을 갖지 않았거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사람의 수준 이하로 저하시킬 경우 이 모든 비용과 손실에 대한 보상은 필요하다. 더 나아가서 Cohen은 재능있는 사람은 물론 “모든 개인은 자신의 자기 이익을 어느 합당한(reasonable) 정도로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말한다 (ibid. 206/주24). 이 말이 시사하는 것은 재능있는 자라고 해도 항상 자신의 재능을 생산을 위해 전력 투여할 의무는 없고 시급한 자신의 관심과 이익을 위해 전력 투여보다 낮은 수준으로(sub-optimal) 생산에 참여할 수도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 투여할 경우에는 역시 희생된 자기 이익과 관심이 보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Cohen이 허용하는 ‘유인’이 비용과 희생에 대한 엄격한 보상적 차원을 넘어서서 재능있는 자의 특별 노력에 대한 사회적으로 합의된 수준의 차별적 대우를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대우는 사회적 감사의 표시, 그리고 재능있는 자의 지속적 재능 발휘를 독려하는 심리적, 내적 동기 유발에 필요한 수준일 것이다(아직 그 내용이 확실히 논증되지 않았지만 Cohen이 허용할 수 있는 ‘유인’의 차원과 수준을 총칭하여 ‘특수한 부담’에 대한 보상이라 말하겠다). Cohen이 거부하는 유인은 재능있는 자가 자신의 노력을 통해 얻어질 낮은 계층의 절대적 수준 향상을 빌미로 주관적으로 설정하는 — 그것 없이는 재능의 투여나 노력을 줄이려는 것을 협상 카드로 내세운 — 유인이다. 롤즈도 인정했듯이(*JF*, 76) 재능의 존재와 발휘 자체가 그 소유자에게 하나의(내적) 혜택이라고 볼 수도 있으며, 재능을 통한 생산활동에서의 부담이 충분히 보상된다면 (D3에서) 그는 이미 최소한 자원의 차원에서 타인들보다 더 높은 수준에 있게 된다(그래도 Cohen의 어법에 따라 D3을 (‘특수한 부담’이 감안된) ‘평등’이라고 부르자). D2에서는 재능있는 자들이 이 수준을 넘어서 추가적 혜택을 요구하고 있으며 Cohen의 주장은 이 요구가 재능의 ‘도덕적 임의성’ 명제와 위배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문헌에서 Cohen은 자신의 ‘평등주의적 에토스’ 개념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 Cohen에 의하면 “한 사회의 에토스는 정감(sentiments)과 태도의 집합으로서 그 때문에 그 사회의 정상적 관행(normal practices)과 비공식적(informal) 압력들이 특정 상태로 정해진다.”(*If You're an Egalitarian*, 145; 강조 첨가됨) 에토스는 한 사회에서 확산되어 있고 뿌리를 내린 동기적 패턴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상적” 기대감과 관행의 근처에 있으며,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특정 생산적 선택 — 얼마만큼의 재능과 노력을 생산에 투여할 것인가의 선택 — 을 하게하고 다른 것을 배척하게 추궁하는 방식은 언제나 “비공식적”이라는 말이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법적 수단이나 기타 강제적 수단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특정 선택적 패턴에 자발적으로 순응하도록 유도한다. ‘평등주의적’ 에토스는 일종의 내면화된 심정적 기반으로서 정상적인 경우에 숙고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평등주의적 원칙에 따라 선택하게 만든다. 이 에토스는 사회주의적 공동체의 호혜적 기반으로 제시될 수도 있지만,<sup>13)</sup> Cohen은 대체로 현실적으로 롤즈적 정의감(sense of justice)이 시민적 공적 활동뿐 아니라 일상적(생산 활동에서의) 선택에도 확대 적용된 것으로 이 에토스를 이해한다. 롤즈 자신이 사회의 기본적 구조가 정의의 원칙들을 지속적으로 준수하기 위해서 그 구조가 적절한 “사회적 풍조(social trends)”와 “사회적 관심사(social interests)”와 조응해야 한다고 지적했거니와,<sup>14)</sup> 우리는 차등의 원칙의 보다 효율적 구현을 위해서(선행 원칙의 위배가 없는 한에서) 최적의 기본적 구조 — 에토스 연합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sup>15)</sup>

13) 롤즈와의 비판적 대화와 빗겨있지만 자유주의적 평등 개념을 넘어선 공동체적 호혜성에 대한 암시로서는 Cohen의 “Why Not Socialism?” 참조.

14) *Political Liberalism(PL)* 266, *JF* 137 참조.

15) 최근에 다수의 경제학자들이 사회적 규범과 제도간의 상호작용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Ben-Ner와 Putterman이 편집한 책에 실린 논문들을 참조할 것. 그 책에 기고한 논문(“Values and Institutions in Economic Analysis”)에서 편집자들은 그 상호작용이 가족, 근로현장, 그리고 국가 사회보험의 세 영역에서 존재

이러한 배경과 함께 고찰할 때 롤즈에 대한 내적 비판으로 이해된 Cohen의 입장은 일견 롤즈 정의론 내에 수용되어야 할 많은 긍정적 측면을 지니고 있다. D3이(세 분배상태들 중에서) maximin이 달성된 상태이자 재능의 ‘도덕적 임의성’ 명제에 가장 충실한 분배이며, 또한(후기 롤즈에서 중심적 명제들은 아니지만) “더 못사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않는 한 더 커다란 이득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의 ‘박애(fraternity)’,<sup>16)</sup> 잘 정돈된 사회에서 정의의 요구에 대한 완전한 부응(full compliance with the demands of justice) 등의 롤즈적인 이상들과 D2보다 더 잘 어울린다. 만약에 배경 조건들이 존재한다면, 즉 D3이 현실적으로 구현 가능하고 롤즈의 선행 원칙들이 위반되지 않는다면, D3과 그것을 동기적으로 지지하는 평등주의적 에토스가 **롤즈적인 틀에서** 최적의 조합이 될 것이다. 그러나(Cohen 대 롤즈 논쟁에서) 롤즈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의하면 배경 조건들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모든 상태들이 규범적으로 바람직한 것은 아니며, D3을 향한 지속적 추구는 롤즈적 틀을 어지럽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

하고 있음을 제시한다. Bowles와 Gintis는 “효율적인 재분배”를 촉진하기 위해서 공동체들의 역할을 논하고 있다. 이 경제학자들의 규범, 가치, 그리고 공동체의 개념이 Cohen의 평등주의적 에토스, 그 에토스에 기반한 공동체와 정확히 부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롤즈 비판의 방향과 대체로 지향점이 유사하다. 이들의 논의는 경제와 관련된 규범적 목표들(Bowles와 Gintis의 경우에는 효율성을 잃지 않은 평등, Ben-Ner와 Putterman의 경우에는 제도의 강화와 활력)의 원천과 매개체로서 시장과 국가가 유일한 장이 아니라는 생각을 유포하고 있다.

- 16) *Theory*, 105/90. 또한 평등주의적 에토스는 롤즈가 언급하는 (재능/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품을 수 있는) 다음의 세 가지 “비도덕적(nonmoral)” 감정들의 반대편에 있는 심정적 기질이라고도 생각될 수 있다: “덜 혜택 받은 사람들이 그 위치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질시(jalousy), “더 커다란 혜택이 그들을 자신과 동등한 수준에 이르게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으로서의 인색함(grudgingness), 그리고 스스로 필요 없고 사용할 수 없는 혜택을 그들에게 주지 않으려는 악의감(spite). *Theory*, 533/476-68.

Cohen의 제안들이 포함된(따라서 그들이 보기에는 비롤즈적인) 입장보다 원래 롤즈의 틀이 전체적으로 더 나은 이론적 체계이다.<sup>17)</sup>

### 3. 롤즈 옹호론의 비판적 검토

#### 1) Cohen의 제안과 자유 원칙의 충돌

롤즈 옹호자들에 의하면, 도덕적으로 임의적인 재능에 의한 혜택 차이를 줄이는 것을 정의의 핵심적 목표로 삼고 그 목표의 달성을 위해 시민적, 공적 의무를 넘어서서 평등주의적 에토스를 동원하여 일상적 선택과 활동에 영향을 주려는 제안은 (차등의 원칙에) 선행하는 정의 원칙, 즉 자유의 원칙을 침해한다. 롤즈의 정의론은 도덕적 임의성 명제 이외에도 다양한 이상들을 표방하는 복잡한 체계로서 그 안에는 원칙들의 위계가 있고 차등의 원칙은 체계와 위계가 지켜지는 한에서 추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up>18)</sup>

17) <인문논총>의 한 심사자는 “평등주의적 에토스가 평등을 결과할 것이라는 주장은 그 에토스에 대한 정당화가 될 수 없다. 롤즈의 논증 자체가 왜 평등은 그 자체로 논증될 수 없는가를 논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다른 심사자는 평등주의적 에토스에(“지나치게”) 의존한 주장은(기본적 사회구조 위주의) 롤즈 정의론의 “핵심문제를 빗겨가는 것”일 수 있으며, 그러한 주장은 롤즈에 대한 내재적 비판에 “불필요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제기한다. 만약에 “평등 자체가 논증될 수 없다는 것”이 (경제적) 평등에 내재적 가치를 부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면, 아래에서 우리는 그 입장이 비판될 수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또한 에토스와 사회구조의 유기적 상호작용이 있다는 점에서, 에토스를 롤즈 정의론에 포함시키는 것은 그것을 (부당하게) 배제하고 있는 롤즈와 그 옹호자들의 해석에 대한 (내재적) 비판으로서 유효하다고 여겨진다. 물론 Cohen적인 에토스가 전반적으로 자유주의적인 롤즈의 틀에서 수용될 수 없는 지점에서 우리는 더 이상 내재적이 아닌 비판을 마주하게 된다.

18) 롤즈의 민주적 평등 자체가 모든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에게 수용될 만한 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Cohen의 제안이 자유의 원칙과 충돌하는가. Cohen의 평등주의적 에토스의 두 측면들을 나누어 살펴보자. 우선 그것은 재능있는 자가 기꺼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여 생산결과를 늘리도록 고무한다. 이 부분을 그 에토스의 “생산적 역할”이라 하자. 둘째로 그것은 생산 이후에(높은 수준에서) 다시 평등을 회복하는 재분배(D3)에 동의하게 한다. 이것은 그 에토스의 “재분배적 역할”이다. 그런데 재분배적 역할 자체가 자유를 구속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롤즈를 포함한 그 어떤 평등주의적 체계에서도 세금을 통한 혜택의 이전이 인정된다. 그 이전의 합당한 양을 정하는 것이 각 체계의 중요 과제일 것이며, 분배정의에서 롤즈와 Cohen의 공통지반은 자신의 노동과 재능의 결과 전부에 대한 자유지상주의적 자격(libertarian entitlement) 개념을 수용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평등주의적 에토스의 생산적 역할에 주목해 보자. 이는 재능있는 사람들이 그 재능을 생산적으로 가장 잘 활용하는 영역에서 일하며 (항상 전력투구는 아닐지라도) 높은 생산력을 유지하도록 고무하는 에토스의 역할이다. 우리는 손쉽게 이러한 역할을 가진 에토스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줄일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다(이 자유가 과연 롤즈 체계 내에서 기본적인 자유에 속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논의를 위해서 그렇다고 가정해 보자).<sup>19)</sup> 또한 이러한 생산적 활동은 재능있는 자가 주관적 의미를 부여하는

---

수의 이상들을 포괄한다: 사회, 경제적 분배에 있어서 도덕적으로 임의적인 영향들의 제거 혹은 축소 이외에도 두 근본적 도덕적 능력(선의 관념과 정의감)을 지닌 시민이라는 이상, 공공성(publicity), 잘 조직된 사회의 이념, 자기 존중의 기초 등. 공정한 기회평등과 차등의 원칙의 연합에 대한 최선의 해석인 바 내부적으로 복합적인 이 민주적 평등이 다시 자유의 원칙이라는 선행 원칙에 종속된다. 이러한 롤즈 정의론의 복합성에 기대서 Cohen과 같은 제안에 반대하는 대표적 예로서 Daniels의 “Rawls's Complex Egalitarianism” 참조.

- 19) 직업선택의 자유의 규범적 중요성에 대한 치밀한 분석으로서 Wilkinson의 책 3장을 참조할 것. 롤즈가 말하는 시장 체제의 한 이점: “필수적 배경 제도들이 주어진다면 [시장 체제는] 평등한 자유와 기회의 공정한 평등과 양립 가능하다. 시민들은 캐리어와 직업의 자유로운 선택을 갖게 될 것이다. 강요된 노동이나 노동의 중앙 통제를 위한 그 어떤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Theory,*

다른(종교, 문화적) 활동에 참여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삶을 엮어 가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러한 반론에 대해서 평등주의적 에토스의 지지자들은 세 가지 정도의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로 우리는 자유 원칙의 우선성에 대해 그 본성과 강도를 물어야 한다. 롤즈의 공식적 견해는 원칙들이 “순열적 혹은 사전편찬적 순서(a serial or lexical order)” 혹은 그에 유사한 위계 하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순서상에 있는 그 어떤 원칙도 선행하는 원칙들이 완전히 만족되지는 조건하에서만 극대화될 수 있다.”(*Theory*, 42-43/37-38) 그러나 롤즈는 또한 이러한 원칙 순서의 특정한 이념이 단지 “우선성 문제에 대한 대략의 (approximate) 해결책”임을 인정한다. 왜냐하면 우리는(선행 원칙들의 완전한 만족을 기다리는 와중에) “뒤에 있는 원칙들이 결코 작동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는 것을 피하고 싶기 때문이다. 이 말은 원칙들 간의 우선성이 **현실상에서는** 절대적이거나 극도로 엄격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선행 원칙들의 핵심적 부분이 충족되었다면, 나중 원칙들에 있어서의 커다란 진전이 선행 원칙들의 작은 후퇴에도 불구하고 시급한 아젠다로 채택될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선행 원칙들(의 만족)에 관한 흐린 부분이나 깊은 논쟁들이 있다면, 일부 나중 원칙들의 확실한 진전이 공공 정책의 추진 동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누적된 공적, 사적 선택들이 한 사회의 에토스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그 에토스가 다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에 심대한 진전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상황을 상상해 볼 수 있다. 그 과정의 어떤 지점에서 재능있는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일정 정도의 축소는 심지어 롤즈적 관점에서도 용인되어야 할지도 모른다.<sup>20)</sup>

---

272/240-41) 그는 또한 고도로 생산적 일에 강제로 참여하는 것을 부당하게 만드는 것이 자유의 우선성이라고 말한다(*JF*, 64). 개인들의 생산적 선택들은 “사회가 제공하는 다양한 유인들(incentives) 하에서” 행해져야 하며, 최소수혜자에게 혜택이 가능 방식으로 그 유인들의 수준을 조정하는 것은 사회의 기본적 구조의 역할이다.

20) 원칙들 간의 약화된 우선성의 해석에 대해서 Van Parijs(226) 참조.

둘째로, 롤즈 옹호자들은 개인의 애초의 자기관련적 생산적 결정을 변경시키는 모든 동기적 영향력을 자유에 반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들에 의하면 평등주의적 에토스는 도덕적 설득이라는 미명하에 직업선택의 범위를 축소하지만, 시장이 제공하는 유인은 그것을 확장한다: “개인이 자신의 포괄적 도덕적 견해와 상관없이 생산력을 증대하는 동기를 가져야만 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고 비자유적이다. 금전적 유인들은 [재능있는 사람들에 의해 시장 생산이 집중되는 것의 혜택을, 자유를 축소하는 정책을 도입함이 없이도 최소 수혜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데] 이는 그 유인들이 목적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명령 혹은 의무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신의 삶을 규제할 때 반응할 수 있는바 여러 대안들 가운데 하나의 선택으로 제공되기 때문이다.”<sup>21)</sup> 그러나 **필연적으로** 도덕적 동기유발은 자유를 축소하고 금전적 유인은 그것을 확장한다는 주장이 과연 일리가 있는가? 도덕적 의무와 자유의 관계를 보다 긍정적으로, 혹은 더 나아가서 개념적으로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로 보는 (칸트적) 시각도 가능하거니와 필자는 보다 직관적이고 단순한 차원에서 평등주의적 에토스와 자유의 **필연적** 대립이라는 주장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어떤 도덕적 신조나 의무감이 (부당하게) 개인의 자유를 축소하는지는 문제가 된 신조나 의무 자체의 내용과 정당성, 그리고 그것과 충돌하는 타산적 관심의 종류와 범위에 의존할 것이다. 반면에 경쟁적 시장이 제공하는 금전적 유인들이 교묘하지만 적극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잠식하는 다양한 경우들이 가능하며 실제로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이미 언급된 바 있듯이 평등주의적 에토스는 일종의 도덕적 명제에 기반한 것이면서도 내면화된 집단적 기질로서(재능있는 자의 기여에 대한) 사회적 기대감과 기준을 높게 설정하면서도 그것의 달성을 쉽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자유주의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한 자들에 대해 지속적이고 의식적으로 염려하는 것을] 억압적이라고 여길 것이지만, 그들이 이 점에서 맞든 틀리든 간에 평등주의적 에토스의 한 기능은 최소수혜자에 대한 의식적 주

21) Meckled-Garcia, “Why Work Harder?” 788.

목을 불필요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 에토스가 작동할 때]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일은 사람들이 — 정상적 경우에 — 자기 이익의 추구를 억제하는 원칙, 그리고 그 원칙에 인도되어 사람들이 행위를 할 경우 덜 혜택 받은 사람들이 이득을 얻는 것을 요점으로 하는 원칙을 내면화하고 의식적 생각 없이도 그것에 따라 생활하는 것이다.”(“Incentives”, 384)<sup>22)</sup> 물론 (자유와의) 조화의 느낌이나 감정은 조화가 없는 상태에서도 생겨날 수 있다. 만약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초기 단계에서 특정 행위 태도들이 심어지고 조작 메커니즘과 감언이설에 의해 효과적으로 유지된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스스로의 자율성과 도덕적 신조를 표현한다고 느낄 것이지만 그들이 자신 행위의 실제 저자(author)가 아님은 분명하다. 그러나 평등주의적 에토스가 일종의 **도덕적** 에토스, 즉 옹고 정당화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명제를 반영하는 동기적 패턴임을 잊지 말자.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덕의 개념으로부터 흘러나온 일단의 생각을 빌려 온다면 평등주의적 에토스에 의해 동기 지워진 행위는 행위자의 **결정**과 (에토스의 저변에 있는 도덕적 입장에 대한) **숙고적(reflective)** 수용을 반영한다. 물론 평등주의적 에토스의 성공적 형성은 초기 교육단계에서 범례들과의 주기적 만남과 습관적 모방에 의해 성취될 수밖에 없고 일부 심리적 유도가 그 과정에서 필요하겠지만, 하나의 도덕적 에토스로서 그것은 **원칙적으로**는 숙고적 논의와 정당화에 붙여질 수 있어야 한다.<sup>23)</sup> 만약에 롤즈 옹호자들

22) “독일의(상대적으로 말해서) 평등 — 우호적인 에토스가 잘사는 독일인의 자유를 축소한다고 말한다면 얼마나 이상스럽게 들릴지를 생각해 보라. 내가 이를 언급하는 것은, 차등의 원칙을 일상적 삶으로 확장하려는 나의 시도가 롤즈적 정의의 첫째 원칙[자유 원칙]을 위반한다는 반론을 기대해서이다.”(*If You're an Egalitarian*, 212/주 32)

23) 이 글의 원천이 되었던 필자의 글에 대한 서신을 통한 논평에서 Cohen은 사람들이 특정 에토스를 **선택**하거나 형성하는데 의미 있는 기여를 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또한 **의식적으로** 에토스에 따라 행동하거나 동기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필자는 그의 말이 대체로 옳다고 생각한다. 본문에서 필자가 의미하는 것은 에토스가 각개 행위의 동기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일단 내면에 뿌리를 내린 경우) 개인의(생산과 분배에 관련된) 행위와 선택 전반의 색채를

이 롤즈를 따라서 소득의 차이를 전제하는 시장 체제와 “자유와 양립 불가능한 통제 사회(a command society)”가 실현 가능한 사회조직의 유일한 두 대안들이라고 여긴다면(*Theory*, 272/241) 정치적/사회적 상상력의 부족은 그들의 몫이 될 것이고 그들은 결과적으로 자유와 양립 가능한 도덕적 동기화의 (크고 작은 범위의) 다양한 역사적 사례들로부터 배움을 얻는데 실패한 것이다.

## 2) 선행원칙들의 평등으로의 압력

이미 언급된 대로 차등의 원칙 자체는 허용될 수 있는 유인들의 양과 결과적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에 어떤 상한선을 전제하지 않는다. 유인들의 범위에 관한 한 롤즈 옹호자의 기술을 보자: 내가 희귀한 생산적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나 유대교 성직자가 되고자 원할 때 “민주적 평등에 대해 지지를 보내는 한에서 최소수혜자 계층이 내가 [보다 생산적 영역에 종사할 경우] 제공할 수도 있었던 혜택을 어쩔 수 없이 못 가지게 되더라도 목사나 성직자가 되는 것은 나의 자유다. 아마도 나는 나의 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제공된 그 어떤 유인도 받지 않을 수 있다. 혹은 나는 나의 계획을 바꾸는 데 매우 높은 대가를 책정할 수도 있다. 내가 어떤 길을 가든 나의 자유이며, 기본적 구조를 관장하는 차등의 원칙을 준수한다고 해서 이러한 자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Daniels, 268)(여기서 민주적 평등이나 차등의 원칙에 대한 지지는 세금을 낸다거나 하는 형태로 차등의 원칙에 의해 인도되는 공적 제도가 지정한 의무를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이상 개인적(생산적) 선택 등에서 그 원

---

결정하는 동기구조의 일부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동기구조의 형성 또한 대개의 경우 의식적으로 추구된다고보다는 한 사회의 문화, 역사, 이념, 기술단계에 따라 결과적으로 특정 세대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한 사회의 에토스의 성격과 배후에 있는 도덕적 입장은 파악과 이해가 가능하고 그 바람직한 정도와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도 가능하다. 물론 그 변화는 길고 오랜 과정이 필요하고 언제나 판단된 방향으로 변모할지는 미지수이지만.



칙을 추구한다는 것은 아니다).

만약에 롤즈적 유인들이 전적으로 재능있는 집단과 차등의 원칙을 추구하려는 관련 공무기관 사이의 협상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보자(필자의 견해로는 롤즈의 틀 내에서 이러한 협상을 통한 유인의 결정이 원칙적으로 배제되지 않는다). 이 경우 협상의 결과로 초래된 불평등은 **부정의하게 됨이 없이** 원칙적으로는 계속 늘어날 수도 있다. 최소수혜자 처지의 절대적 수준이 상승하는데 필요하다면 차등의 원칙은 그 어떤 양의 유인이나 결과적 불평등을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한 롤즈 옹호자의 말을 빌자면 “[롤즈] 이론의 차등의 원칙 부분은, 자주 그렇게 기술되고는 있지만, **매우** 평등주의적인 것은 아니다 … [왜냐하면] 공적 정의 개념으로 잘 정돈된 사회라는 롤즈의 정교한 이념의 문맥 하에서도 그 원칙은 적절한 정의 개념이 마땅히 비난해야 하는 불평등들을 비난할 수 없기 때문이다.”(Estlund, 109-10)<sup>24)</sup>

24) 물론 차등의 원칙을 추구할 때 많은 경우 **현실적으로** 평등분배(경제적 격차의 축소)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차등의 **원칙 자체가** 평등의 이념에 어떤 내재적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은 아니다(더구나 우리가 위에서(주 4) 보았듯이 롤즈가 최소수혜자에게 보탬이 되지 않지만 해를 주지 않는 불평등도 허용한다면 현실적으로 평등한 분배로 차등의 원칙이 만족되는 사례는 줄어들게 될 것이다). 롤즈는 최소수혜자에게 작은 보탬이 되는 커다란 불평등의 경우들뿐 아니라 최소수혜자에게 미미한 피해가 가기 때문에 상층 집단이 누릴 수 있는 커다란 혜택이 거부되는 경우도 그렇게 현실적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보고 있다(*Theory*, 157/136). 이는 최소수혜자의 처지가 극대화되는 지점을 연기하기 위해서 “세금 등을 통해서 최소한 더 처지가 나은 집단에게 돌아갈 이득의 일부를 그렇지 못한 집단에게 이전하는 제도적 장치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JF*, 67-68). 이렇게 차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것)에 의해 촉진되는 이전은 사실상 최소수혜자의 처지를 향상시키면서 동시에 불평등을 축소시킬 것이다. 그렇다면 왜 더 많이 이전하여 차등의 원칙의 maximin 부분을 최대한 만족시키지 않는가? 왜 Cohen적 관점에서 볼 때 적당한 분배적 종료상태인 D3에 부응하고, 남겨진 불평등이 이전 불가능한 혜택에 의해서만 야기되는 지점으로까지 가지 않는가?(이 과정에서 선행 원칙

위의 옹호자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롤즈 지지자들은 롤즈의 전반적 정의론이 사회 경제적 평등을 도모하는 데 전적으로 실패했다는 진단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대개의 전략은 (차등의 원칙에 대한) 롤즈의 선행 원칙들이 기본적 사회구조가 경제적 평등으로 나아가게 독립적인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롤즈의 선행 원칙들은 시민들에게 동등한 기본적 자유와 기회의 공정한 평등을 보장하는데 이러한 보장과 경제적 평등 사이에는 긍정적 상관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선행 원칙들을 실행하는 배경적 제도들은 차등의 원칙의 적용범위를 넘어서는 정도까지 경제적 평등을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적/시민적 자유를 행사할 힘을 소유하기 위해서 개인들은 상당한 정도의 능력과 자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치적 자유의 공정한 가치”의 평등이라는 롤즈적 이념이 현실에서 작동하려면 그 누구도 자신의 불균등한 재력을 통해 정치적 과정에 과도한 영향을 미칠 수 없어야 한다. 또한 “공정한 기회평등”의 원칙도 동등한 재능 수준과 동일한 (재능의) 사용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동등한 사회 경제적 전망과 성공을 누릴 수 있을 때 성취되는 것이다. 롤즈 옹호자들은 이러한 선행 원칙들이 진전될 경우의 누적적 성과를 생각해 볼 때 롤즈적 배경 제도에 의해서 과도한 경제적 격차는 허용되지 않으리라는 보증을 받을 수 있다고 여긴다: “따라서 첫째 원리는 경제적 불평등에 그 자체의 한계들을 부여할 수 있으며 그 한계들은 차등의 원칙이 제공하는 한계보다 훨씬 더 엄격할 것이다.”(Estlund 110; 첨가된 강조임).<sup>25)</sup>

---

이 위반되지 않거나 차등 원칙상의 상당한 진전이 선행 원칙의 작은 후퇴만을 동반한다면).

25) Daniels(262-63), Smith(217 이하) 참조. 사실상 이것이 본질적으로 롤즈 자신이 그의 틀 내에서 점차로 커져 가는 경제적 격차의 가능성에 대해 반응하는 방식이다. *Theory*, 157-58/136-37, *JF*, 67-68 참조. 선행 원칙이 보장하려는 정치적 자유의 평등이 일정 부분 경제적 평등을 유도할 것이라는 주장에서 더 나아가, 경제적 평등 자체가 바로 평등한 정치적, 시민적 자유와(롤즈적인) 기회평등에 필요한 **정도로만**,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것에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추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Scheffler와 Anderson의 평등론이다. 롤즈 자신

이러한 롤즈적 전략(“평등을 위한 선행 원칙의 압력” 혹은 줄여서 “선행 평등”의 명제)을 두 측면에서 논의해보자. 첫째는 선행 원칙으로부터(경제적) 평등으로의 긍정적 영향의 방향이다. 직관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보자면 정치적 시민적 자유들의 평등(the equality of political and civic liberties; 줄여서 “PCL” 평등)이, 한 국가의 특정 정치적/경제적 발전 수준에서 일정 정도의 경제적 평등을 동반하리라고 가정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한 사회에서 경제적 평등을 동반하지 **않으면서** PCL 평등이 성취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특정 수준의 PCL 평등이 성취된 이후에는 그 수준은 다양한 정도의 경제적(불)평등과 양립 가능하며 그 수준 이후의 (PCL 평등에서의) 진전은 경제적 평등의 유사한 진전과 상관관계를 맺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 경우 우리는 남겨진 경제적 불평등에 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결정해야 한다. (PCL 평등 이후의) 모든 경제적 불평등을 포용할 것인가, 아니면 PCL-독립적인 방식으로 그것들을 평가하고 그 중 일부를 공략할 것인가. 롤즈에 대한 Cohen의 비판은 이 문맥에서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 PCL 평등의 진전과 더불어 일정 정도의 경제적 불평등이 존속하거나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PCL 평등의 수준을 높이는 것 이상의 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실행 가능한 (재)분배적 제도들의 집합과 그것들에 대한 평등주의적인 (그리고 PCL-독립적인) 선택은 부분적으로 그 사회의 확산된 에토스에 의해 결정

---

이 이러한 입장에 탄약을 제공했다고 볼 수도 있는 구절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JF*, 131-32 참조. 롤즈 옹호적 입장이 아니더라도 경제적 평등에 대한 ‘정치적’ 해석을 중요시하는 것이 정치철학에 상당히 넓게 확산된 관점임을 필자는 여러 기회를 통해 접할 수 있었다(〈경제철학집담회〉 2005년 2월에서도 그런 논평을 받았음). 이 관점은(부당한) 경제적 격차의 해소 혹은 축소 자체에 핵심적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일정 격차가 가지는 ‘정치적’ 부작용 — 낮은 계층의 정치적, 시민적 역할에서의 왜소화 — 때문에 그 격차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래에서 보겠지만, (필자가 해석한) Cohen의 포괄적 평등주의와 가장 확장된 롤즈 비판에 따르면 분배정의의 근거에서 일부 경제적 격차에 대해서 정치적 부작용과 다른 독자적인 제한이 필요하다.

된다.

혹자는 PCL 평등으로부터 경제적 평등으로의 긍정적 기여가 어느 지점에서 정지한다는 가능성이 순전히 이론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필자는 (예를 들어) 미국에서의 경제적 불평등의 현재 상황은 그 가능성의 현실태라고 생각한다. 경제적(불)평등의 문제에 손을 댄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이, 불평등에 대한 어떤 측정 방식을 채택하는지와 상관없이 미국에서의 소득 불평등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음에 동의하고 있다. 지난 30여년 간 — 대개의 기록된 지표들은 70년대에서 90년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함 — 불평등이 극적으로 심화되었을 뿐 아니라 OECD 국가들 가운데서 미국의 경제적 평등지수의 위치는 바닥이거나 거의 바닥에 접근해 있다. 미국은 경제적 분배에서 최고와 최저 계층의 몫의 차이와 빈곤률의 면에서 가장 나쁠 뿐 아니라 심지어 분배에서 아래에 있는 집단(밑에서 25%선)의 미국 가족의 실질 임금 — 절대적 대등소득(absolute equivalent incomes) — 은 북구나 다른 유럽, 그리고 캐나다의 경우보다 낮다.<sup>26)</sup> 그러나 반면에 같은 기간 동안 미국의 PCL(평등) 수준에서 상당한 진보가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것이 아닐 것이다(흑인, 여성 등 소수 혹은 PCL에서 열세에 있던 집단들에 있어서 시민적 권리들의 확산과 진전은 대부분 그 기간에 성취되었다). 최소한 우리는 그 기간 동안 미국의 PCL(평등) 수준이 저하되었다거나 그 수준이 OECD 국가들의 수준보다 심각하게 낮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례가 PCL 평등에서의 진보와 경제적 평등의 괴리(dissociation)가 가능함을 현실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다.

26) 이러한 표본적 (비교)분석들을 위해서 Atkinson과 Bourguignon이 편집한 *Handbook of Income Distribution*에 포함된 논문들, 특히 Lindert의 “Three Centuries of Inequality in Britain and America,” Gootshalk와 Smeeding의 “Empirical Evidence on Income Inequality in Industrial Countries,” Jantti와 Danziger의 “Income Poverty in Advanced Countries”를 참조할 것. 일부 경제학자들은 70년대 이후로 미국 저소득층의 실질 임금 자체가 축소되었다고 주장한다(예를 들어 Krugman의 글들을 참조).

정치적, 시민적 자유에서의 평등이 평등주의의 주요 관심사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개인적 선택과 책임을 넘어서는 행운에 의한 경제적 혜택의 차이를 줄이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는 평등주의자들 — (Cohen, Arneson, Roemer, Dworkin 등) 최근에 luck egalitarians라고 불림 — 의 상황인식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하는 Scheffler는, PCL 평등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더 커다란 반향(resonance)을 갖고 있다”는 자신의 견해를 지지하기 위해서 현재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자유주의 사회들에서의 정치적 담론의 최근 역사는 다음을 나에게 확신시켜 주는 것 같다. 나는 철학자들 사이에서 행운의 영향을 제거하려는 평등주의(luck egalitarianism)의 상승이, 많은 자유주의 사회들에서 경제적 평등에 대한 관심을 큰 폭으로 대체한 바 있는 시장의 현기증나는 승리의 시기 동안에 발생했음에 이미 주목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동일한 기간 중에 한 가지 현저한 사실은 사회적이고 정치적 이상으로서의 평등의 힘이 계속 자신을 느껴지도록 생명력을 키워 온 것이다.” (“What is Egalitarianism?” 38) 만약에 Scheffler가 말한 대로 인종, 성(gender), 종교, 그리고 민족 — 관련적인 갈등에 의해 자극되어 PCL 평등에 대한 관심이 살아 있고 자라나고 있다면, 그리고 만약에 경제적 평등 상에서의 눈에 띄는 후퇴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심화된 인식과 더불어 PCL 평등 자체에 대한 제도적 그리고 대중적 근거를 도모하는 데 진보가 있어 왔다고 (필자가 보기에 그럴듯한) 추정을 더해 본다면, PCL 평등과 경제적 평등이 서로 엇갈리게 진행될 수 있다는 필자의 전제는 현실적으로 옹호된 셈이다.

롤즈 옹호론자들은 미국의 상황에 직면해서 “선행” 평등의 명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마도 지난 30년간 미국의 PCL(평등) 수준이 실제로 진보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그 주장을 가장 그럴듯하게 만들려면 선행 원칙들 중에서 “정치적 자유들의 공정한 가치”라는 부분에 주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경제적 힘의 집중은 부유한 사람들이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과도하게 편중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 것이며, 이는 “공정한” 가치의 후퇴를 야기한다. 따라서 이 논증은 “정치적 자유들의 공정한 가치”를 확보하는 것이 경제적 집중을 제거하는 데 충분하다던가 그 목표를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함축한다. 그러나 필자에게는 여전히 “정치적 자유들의 공정한 가치”가 어떤 문턱의 수준을 넘어서면, 그 지점으로부터 그 가치의 진보는 경제적 평등을 그 자체만으로 (동일한 페이스로) 동반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인다. 그리고 경제적 불평등의 크기를 결정하는 데 비정치적인 분배 정책들이 상대적으로 더 커다란 혹은 독립적인 몫을 가질 수도 있다.<sup>27)</sup> 정치적 자유들의 공정한 가치의 존재 혹은 진보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데 부분적으로 그 이유는 “공정한”(fair) 가치가 “평등한/동일한” 가치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며 정치적 자유들의 가치가 분산된 영역들에서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정한 가치”에 대한 우리의 관심사가 경제적 불평등에 관련된 그 어떤 정책적 가이드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들에서, 그리고 우리가 현재 불평등의 공정성에 대해 우려할 만한 PCL-독립적인 근거들을 갖고 있다면 — “불공정한” 정치적 가치들의 근거라는 점과 상관없이 경제적 격차/비율이 정당화될 수 없는 수준이라면 — 그 불평등의 축소를 직접적으로 추구하는 시도가 행해져야 한다.

“선행” 평등 명제의 기본적 자유 부분을 떠나서 이제 기회의 공정한 평등 (fair equality of opportunity; 줄여서 FEO) 원칙이 이 명제에 든든한 지원을 해주는지 살펴보자. 이와 관련된 롤즈의 언급: “공정한 기회 평등과, 정의의 선행 원칙들에 의해 요구되는 바 잘 작동되는 경쟁 체제라는 배경 제도가 갖추어진다면 더 혜택을 많이 가진 자들은 하나의 집단을 이루어 시장에서의 자신의 힘을 악용하여 스스로의 소득을 올리려 할 수 없을 것이다.”(JF, 67) 예를

27) Lindert는 소득 (불)평등과 정치적 목소리의 (불)평등 사이의 관련에 주목한다 (“Three Centuries,” 210). 그러나 그는 이러한 상관성이 “고도로 왜곡된(highly skewed) 사회들,” 즉 1830년대 이전의 영국이나 오늘날의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처럼 불평등하고 미개발된 사회들에서 가장 두드러진다고 말한다. 일반적으로 그는 또한 소득 불평등을 추동하는 힘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동시에” 정치적 목소리에서의 불평등 뿐 아니라 “국가회계(pre-fisc) 이전에 산출된 소득 불평등과 빈부계층 사이의 정부 재분배”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그 불평등과 재분배가 상호작용하는 방식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들어 FEO가 견고하게 제도화된 사회에서는 의사들은 자신들(만)의 이득을 위해 의료비용을 상승시킬 협상력을 동원하기 위해서 연합을 형성할 수 없다는 말이다. FEO에 의해서 의료 전문직종은 의료적 재능과 그 재능을 단련하고 사용할 열의를 가진 사람들 모두에게 개방되어야 하고, 이렇게 개방된 문턱으로 생겨나는 의사들의 지속적 공급과 다른 의사(지방생)들의 존재는 일부 의사들이 배타적으로 자기중심적 협상을 하려는 시도를 좌절시킨다. FEO가 어느 정도까지 이러한 장력과 효과를 가진다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 그러나 FEO가 의사들이 자기중심적 협상에 임하는 것을 **항상** 막아주기에 충분할 것인가? 많은 경우에 그 직종에서 확고한 경쟁적 (그리고 공정한) 구조와 배치를 유지하는 것이 전략적 협상이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는 가장 절실하고 효과적인 방책이다. 그리고 Cohen도 이를 거부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의 논점은 단지 이것이다: 일부 경우들에서 FEO는 상이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 사이의 불평등이 적절한 수준에 머물도록 하는 데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롤즈의 정의에 따르면 FEO는 “**유사한** 행위 동기를 갖고 **유사하게** 재능을 부여 받은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 우리는 어떤 전문직종의 문턱을 통과한 사람들 혹은 그들의 대부분이 시장에서의 분배적 균형을 자신들의 혜택에 유리하도록 기울이고자 공모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재능이 없거나 동기를 갖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일정** 양의 혜택이 약속될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확대된 불평등이다). 그들이 롤즈적인 선행 원칙들 중 그 어떤 부분을 위반했는가? 이점은 매우 불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된 재능과 훈련을 갖춘 모든 이들에게 문호가 개방되었으므로 경쟁이 조작되지 않았다. 그들은 또한 중요한 정치적, 시민적 체제를 왜곡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자신들의 협상 제안이 이제 재능이 결여된 사람들의 절대적 삶의 수준을 조금이라도 향상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에 근거해서 그 제안을 위한 효과적인 변호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러한 대부분의 경우들에 대한 Cohen적인 진단은 사회 혹은 전문직종에 지배적인 에토스가 병의 원인의 하나라는 것이다(선행 원칙의 위반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그 협상을 가능하게 하고 롤즈적인 협상의 수용을(즉 정의와 자기이익의 타협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바로 정의로운 협약으로 수용하

는 것을) 불가피하게 하는 것은 에토스이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평등을 선행 원칙들이 촉진되는 과정의 결과로서 취급하는 대신에, 경제적 평등에서의 진보가 정치적, 시민적 자유(PCL)의 평등을 향상시키는 데 충분하거나 고도로 생산적이라는 식으로 “선행” 평등의 명제를 이해해 보자.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한 사회가 PCL 평등의 수준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그 사회가 할 수 있고 많은 경우에 해야만 하는 것은(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는 것이리라. 아마도 이것이 롤즈 옹호자들이 말하는바 “첫째 원칙이 경제적 불평등에 그 자체의 한계들을 부여한다”는 주장의 의미일 수도 있다. 이러한 방향의 긍정적 상관성이 어느 정도까지 그리고 정치적 발전의 특정 단계에서 존재한다고 해도, 경제적 평등에서의 더 이상의 진보가 PCL 평등의 개선을 동반하지 않는 지점이 있을 수 있다.<sup>28)</sup>

---

28) Przeworski와 그의 동료들은 민주주의를 가까운 장래에 향유하기 위해서 한 사회에서 **지금** 존재해야 하는 요인들을 발견하고자 시도했다. 135국가들을 (대략) 1950년부터 1990년까지 조사한 결과, 그들은 (현재) 경제적 평등의 수준과 민주주의의 생존 확률 사이에 “어떤 패턴을 찾아낼 수 없었다”고 보고한다. 그러나 그들의 발견사항들 중 하나는 “소득 불평등이 **점차적으로 줄어드는**(declining over time) 나라들에서 민주주의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것이다(“What Makes Democracy Endure?” 171; 강조는 첨가됨). 따라서 결과적으로 경제적 평등의 확대가 민주주의의 생존율에 어떤 긍정적 기여를 하고 있음이 주장됨직하다. 그러나 이러한 발견을 롤즈적 “선행” 평등에 대한 하나의 증거로 인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로, 그들의 결론은 문자 그대로(그들의 글에서는 약간 도식적으로 “정부직위들이 경쟁적 선거의 결과로 채워지는 권력조직”으로 규정된바) 민주주의의 **생존**(survival)에 관한 것이어서, 불평등이 확대되는 나라들은 그야말로 독재로 (돌아)갈 확률이 많다는 것이다. 그들의 조사 결과는, 한 사회가 민주주의의 사활의 단계를 **지난 후에** 그 사회의 경제적 평등의 수준이 부침을 겪을 경우 그 민주적 정치운용의 질적인 측면에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둘째로 그들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 강조하는 바는 민주주의를 지속 가능하도록 만드는 데 있어서 부(affluence)의 절대적 수준이 가지는 긍정적 역할이다. 그 점에서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게 된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경제적 평등을 향한 재분배가 여전히 실행 가능하다면 사회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사회는 더 이상의 재분배가 정의의 사안을 넘어선다고 보고 재분배의 중단을 선언하거나, 경제적 평등을 계속 추구할 어떤 PCL-독립적인 이유와 기준을 모색할 수도 있다.

### 3) 공공성 논증(the publicity argument)

공공성의 이념과 롤즈 체계 내에서 그것의 역할에 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금 논의 중인 Cohen 류의 비판과 관련된 세 가지 논점들만을 제시한다: 정당화(justification)에서의 공공성, 정보검색 가능성(informational checkability)에서의 공공성, 그리고 공공성과 안정성(stability)의 연결.

첫째로, 롤즈는 애초에 공공성을 보다 높은 추상적 수준에서 제시된 자신의 계약론의 한 가지 장점으로 소개한다. 그의 정의 원칙들은 ‘가설적’이고 ‘잘 정돈된 애초의 상황에서’ 합리적 개인들에 의해 선택되리라는 것이다(Theory, 16/14). 다시 말해서, 공공성은 롤즈적인 원초적 상황(original position)에서 정의의 원칙들이 도출되기 위한 조건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선택된 원칙들에 대한 정당화의 일부를 구성하게 된다. 그는 공공성 조건을 만족한다는 점에서 자신의 두 원칙들이 다른 후보들보다 (예를 들어 공리의 원칙보다) 더 우월하다고 여긴다. “모든 상대자들에게 수용 가능함”이라는 이념과 더불어 두 원칙들은 설명되고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29). 나중에 『정치적 자유주의』에서는 “가설적”(상황에서의) 수용보다는 “상대적으로 잘 정돈된 근대 민주적 정치체제 하에서 모든 합리적(reasonable) 시민들에게 수용 가능함”이

---

“우리는 한 나라가 충분한 부를 축적한다면, 다시 말해 인구 당 연간소득을 6천 불 이상 갖게 된다면, 하늘이 무너지기 전에는 민주주의는 확실하게 살아 남을 수 있다.”(177) 그들의 발견은, 때로는 경제적 평등 상의 동등한 진보가 없이도 PCL 평등 수준이 향상할 수 있다는(그리고 그 반대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필자의 주장과 완전히 양립 가능하다.

라는 이념이 보다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된다.

Cohen에 대한 롤즈적 대응들 중 하나는 분배 원칙의 공적 수용 가능성을 추구하려 할 때, 현실적으로 우리는 “최소의 수용 가능성을 보일 사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이 사람은 바로 그 원칙을 구현하는 구조 하에서 “최저 수준에 있게 될 사람”일 것이라는 주장에 근거한다. 그리고 차등의 원칙은 최저층의 처지의 절대적 수준을 진전시키는 방식으로 모든 불평등이 작동할 것이라는 보장과 함께 바로 이 사람에 의해서 수용될 것이다.<sup>29)</sup> 그러나 Cohen의 평등주의적 에토스에 우호적인 사람들은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이 문맥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고 볼 것이다. 우리는 이(최저층의 대변자인) 사람이 공정한 분배의 문제에서 선행적으로 수용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롤즈적 원칙들의 내용에 관해서 더 많이 알 필요가 있으며 불평등이 발생한 상황 — 그 크기, 원인, 그리고 그것을 줄일 수 있는(혜택) 전이와 재분배의 실행 가능성 —에 대해서도 더 자세하게 알아야 한다.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도덕적 임의성’ 명제 — 타고난 자연적 재능과 사회적 지위가 그 소유자의 응분과 분배에서의 자격을 구성할 도덕적 관련성이 없다는 명제 — 를 분배에서 한 중요한 원칙이라고 간주한다고 해보자. 그리고 현재의 불평등이 재능있는 집단 편에서 그 어떤 “특수한 노동 부담”이나 심대한 자기-관련적 의무들(agent-centered prerogatives)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지도 않을뿐더러 더 이상의 평등주의적 (혜택) 이전이 실행 가능하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불리한 계층이 비록 자신의 처지의 절대적 수준이 얼마간 향상된다고 해도 커져 가는 불평등을 수용하지 않게 될 지점이 올 수 있다. 차등의 원칙의 “느슨한” 해석 — 최소수혜자의 처지 상승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불평등뿐 아니라 재능있는 자가 더 일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표현에 의한 유인과 결과적 불평등도 허용하는 해석 — 의 테스트를 통과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29) 이 유형의 대표적 논증을 위해서 Julius 334-35 참조. 또한 최저계층의 “거부권”(veto)이 차등의 원칙의 도출로 이어질 것이라는 롤즈의 언급도 참조할 것 (PL, 281-82).

하고 최소수혜층은 어떤 불평등을 유발하는 (재능있는 자의) 제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어떤 지점에서 그들의 특정 분배(원칙)에 대한 수용 여부는, 자신들 처지의 절대적 수준의 향상뿐 아니라 자신들과 상층의 처지 사이의 격차의 공정성에 의해 인도될 것이다. 만약 모든 분배적 이상들이 공적이고 상호주관적인 정당화에 붙여져야 한다면 차등의 원칙(의 “느슨한” 버전)이 Cohen적인 부담이 감안된 평등(burden-adjusted equality)보다 항상 혹은 필연적으로 우월하리라고 생각할 이유는 없다.

이제 공공성의 둘째 측면인 규칙 — 준수의 공적 (정보) 검색 가능성으로 넘어가자. 많은 롤즈 옹호자들은 이 측면이 롤즈적 공공성의 핵심이라고 본다. 실제로 일부는 롤즈의 두 원칙들이 바로 이 측면을 만족하기 때문에 모든 개인들에게 수용될 가능성이 있고(즉 정당화 가능하고) 지속 가능하다(즉 안정성에 이바지한다)고 주장한다.<sup>30)</sup> 이 주장에 의하면 그 내용, 요구사항, 그리고 준수의 정도가 공적으로 검색 가능한 규칙들만이 ‘공적’ 규칙들이다(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공적 규칙들만이 정당화와 안정성에 복무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이런 공적 규칙들은 모두 제도적 규칙들이다. 그것들이 시민들에게 요구하는 바가 명확하게 제시될 수 있고 그 규칙들이 어느 정도로 준수되고 있는지도 쉽게 관찰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적 검색은 상호주관적으로 시행될 수 있기 때문에 무임승차자를 찾아내거나 남들이 지키지 않는 규칙을 허술하게 나만 지키는 사태를 방지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해진다.

반면에, 롤즈 옹호자들에 의하면 Cohen적인 에토스가 한 사회에서 존재하는지, 그것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특정 행위가 그 에토스에 부응하는지의 여부가 공적으로 검색되기 힘들다. 어떤 에토스가 행위의 동기적 배경을 구성하는지는 내적(심리적) 사안이다. 우리는 행위자의 외적 행태를 관찰하여 에토스와의 부합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우리는 그의 의도, 생산력의 수준, 그가 가진 “특수한 부담”의 존재와 정도, 그리고

30) 정보(검색)적, 인식적 문제들에 근거하여 Cohen을 비판하는 예로서 A. Williams 참조.

관련된 그의 행위자 — 중심적 의무 등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때로는 행위자 자신도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명확한 관념을 갖고 있지 않기도 한다. 자기만이 그 자신의 감각과 판단을 흐리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sup>31)</sup> 더군다나 상호 주관적 경우들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 평등주의적 에토스와 관련된 이 “제한된 정보라는 사실” 때문에 그것은 공적 규칙과 어울릴 수 없고 공적 제도의 일부가 될 수 없다.

평등주의적 에토스의 지지자는 이 비판들에 대해서 두 가지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그 에토스의 작동과 메커니즘에 대한 관련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들이 존재한다. 반면에 몰즈적인 “공적” 제도적 규칙들도 나름의 (종종 매우 심각한) 정보관련 문제점들을 갖는다.

우선 몰즈적인 의무 개념의 기술에도 “애매한”(vague) 부분들이 있을 뿐 아니라 — 몰즈에 의하면 아직 정의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의무는 맹아 상태의 정의로운 구조를(공적 규칙 준수 이외에도) 폭넓게 촉진하는 것인데 “최소한 이것이 우리 자신들에게 너무 많은 비용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이행될 수 있을 경우에 한해서”라는 단서가 붙는다(Theory, 115/99) —, 우리가 이미 살펴 본 바 있듯이 개인의 직업관련적, 그리고 타인관련적 결정들의 공적인 차원과 사적인 차원은 불가피하게 중첩되는 경우가 많다. 둘째로 일부 중요한 경우들에서 평등주의적 에토스가 요구하는 바가 이루어졌는지를 인식하는 것은 차등의 원칙이 만족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아닐 수 있다. 일부 유형의 평등주의적 에토스는 분배가 “필요에 따라 개인들에게”라는 신조에 의해 이행될 터인데<sup>32)</sup> 필요(needs)와 그것의 만족 상태를 인지하는 것

31) 몰즈 옹호주의자들의 이 논의는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비대칭적 정보”(asymmetric information)의 문제가 평등주의적 에토스의 경우 더 심각해서, 공통의 합의가 수행되고 있음을(상호) 확인시키는 문제(“the assurance problem”)와 이에 따른 합리적이지만 타산적인 개인들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문제(“coordination problem”)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32) Carens의 소위 “사회주의적 의무” 개념이 이를 지향하는데 이러한 분배를 위해서 개인들은 자신의 작은 이익보다는(필요에 따른 분배를 위해) 전체 생산

은 내적으로 “애매한” 것은 아니다. 혹은 우리는 전반적 생산력의 성장과 더해택을 받은 집단으로부터 재능이 없는 집단으로의 이전의 증가로 향상된 수준에서의 평등(D3)이 달성되었을 때 그 사회의 분배 패턴이(Cohen 식의) 평등주의적 에토스에 의해 부분적으로 고무되고 있음을 판단할 수 있다. 셋째로 “특수한 부담”의 정도를 확인하고 측정하는 빈틈없는 방법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개인들의 필요와 능력에 적절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정기적 조정과 세련화의 메커니즘을 갖춘 공적 점검 체계를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공적 논의와 포럼, 의견 교환이 사람들에게 “특수한 부담”의 정상적 범위에 대한 관념을 줄 것이고, 다양한 교육적, 직업적 시스템들과 상담 기구들이 “사람들을 그들의 능력에 따라 분류하고 적합한 직업 노선으로 배치하게” 될 것이다 (Carens, 1975). 평등주의적 에토스가 확산되어 있고 효과적으로 내면화된 사회에서, 이러한 과정은 과도하게 (개인의 사적 영역에) 간섭하는 조사 없이도 실시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롤즈적인 체제도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발생위험에 상당히 심하게 노출되어 있다. 특히 재능있는 집단의 편에서 그러한데, 그들이 던지는 더 높은 보상의 요구의 합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이 (더 이상의 보상 없이도 결국 하게 될 일을 위해서 보상을 요구하는) 허장성세(bluffing) 혹은 기타 순전히 전략적인 협상의 관행에 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롤즈적인 상황에서도 당사자들의 내적 과정에 대한 일정 정도의 정보가 요구된다.

이 지점에서 필자는 Cohen과 롤즈 옹호자들 사이의 논쟁에서 대조되는 상황들의 성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롤즈 옹호자들은 주로 롤즈적인 의미에서 이상적 상태, 즉 (롤즈 정의론의) 원칙들에 대한 완전한 준수가 존재하는 잘 정돈된 사회와 Cohen의 에토스가 아직 잘 뿌리를 내리지 않은 상태를 비교하려는 경향이 있다. 전자의 상태에서 개인들은 모두 그들의

---

력의 상당한 증대에 더 무게를 두어 생산적 결정을 내려야 하고, 이러한 의무는 적절한 동기체계의 확산에 의존한다.

공적 활동에서 정의감에 기반하여 행위한다: “각 개인은 [정의의 공적] 개념을 **자발적으로**(willingly) 준수하는데, 이는 타인들이 기꺼이 정의롭게 행위하려는 것을 목격하고서는 [정의 원칙이] 요구하는 바를 이미 **내면화했기** 때문이며 그 요구사항들이 다시 자신의 다른 가치들과 부합하기 때문이다.”(Williams, 244; 강조는 첨가됨) 우리는 어떻게 롤즈적 행위자들이 정의의 개념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는지 혹은 그들이 정의의 요구를 “내면화했는지” 알 수 있는가? 실상 롤즈 옹호자들은 우리가 이러한 것을 탐색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정의상 잘 정돈된 사회에서는 개인들이 그러한 (내면적 동기적)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롤즈적 상황에서 이러한 것을 상정할 수 있다면, 우리는 Cohen의 상황에서도 동일한 이상적 측면들을 용인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구성원들이 공적 규칙준수 활동에서 따르는 정의감과 더불어 그들의 생산적 결정에서 내면적으로 뿌리를 내린 평등주의적 에토스에 근거해서 선택/행위하는 사회를 상정해야 한다(Cohen은 하나의 경험적, 심리학적 경향으로서 롤즈의 정의감이 내면화되고 더 많은 경우들에서 정의감에 따라 행위하게 될 때, 아마도 일정 정도의 사회주의적, 평등주의적 이념의 고취와 함께 평등주의적 에토스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봄직하다). 이러한 에토스가 확산된 사회에서는 “자신들의 능력과 관심사들에 대해 숨기려는 강한 유혹들이 대부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정보는 상당히 신뢰할 만하다고 가정할 수 있다.”(Carens, 175-76)

평등주의적 에토스에 따라 행위하는 것은(단지) 타인에 대한 배려나 이타적인 정서들의 주관적 느낌의 동기적 힘에 의존하는 문제는 아니다. 물론 평등주의적 에토스가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도우려는 일부 자발적 심리적 성향을 포함하게 될 것이지만, 이것이 순전히 정서적 공감이나 애착에 근거한 것은 아니다. 그 에토스의 핵심은 오히려 도덕적 확신 — 불공정한 격차를 줄이는 것이 규범적으로 필요하다는 신념과 혜택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의 처지에 기여하려는 자발적 의지 — 을 확산하고 가능한 더 많은 경우들에서 그 확신을 발동하려는 결정이다. 그 에토스가 내면화되는 것은, 롤즈적 정의감이 내면화되는 경우들과 마찬가지로(부분적으로는) 에토스가 요구하는 바를 의

식적으로 수용한 결과이고 그 에토스에 의해 고무된 타인들의 행위를 관찰하고 그 관찰로부터 강화된 결과이다.<sup>33)</sup>

끝으로 공공성 조건과 안정성의 관계를 검토해보자. 규칙이나 원칙이 공적 정당화와(정보) 검색에 더 쉽게 붙여질 수 있다면 그것이 자신이 속한 체제의 안정성에 더 많이 기여하리라고 보는 것은 그럴듯한 가정이다. 엄격하게 말해서 공공성 조건과 그것의 주요 정치적 긍정적 효과인 안정성은 차등의 원칙에 대해서 그 어떤 선행적(정의) 원칙을 표상하지는 않는다. 안정성은 정의로운 사회가 가지면 더 좋은 하나의 소망사항(desideratum)이다. 다시 말해서 정의를 일정 정도 구현한 사회가 더 지속 가능하다는 것은 바람직한 사실이다. 물론 정의로운 사회의 지속성이 정의를 성취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사안이라는 롤즈의 생각은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하다. 정의 개념의 안정성은 그 요소들이 상호 잘 응집되고 강화하는 방식으로 조직되고 실행될 때 가장 효과적으로 획득될 것이다(『정치적 자유주의』에 이르러 롤즈는 안정성에 거의 정의 자체와 동등한 무게를 부여하려 한다. 그곳에서 롤즈의 주요 관심사는 “합당하지만 깊이 대립하고 있는 포괄적 [도덕적 종교적] 신조들”의 조화로운 공존을 추

33) Williams에 의하면 “[평등주의적 에토스와 같이 생산적 결정에 영향을 주는] 시장에서의 에토스는 제도화되는 것을 거부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아마도 학교와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적 캠페인 등을 통해서 Cohen이 반대하는 성 역할상의 부정의를 금지하는 가족 내적 에토스(domestic ethos)를 제도화하는 것은 실행 가능할 것이다.”(이 언급은, 만약 정의의 문제가 엄격하게 공적 규칙의 영역에만 국한된다면 가족이나 사적 영역에서의 성적 불평등이 정의 밖의 문제로 취급될 것이라는 Cohen의 롤즈 비판에 대응하여 제시된 것이다) 그러나 성 역할이나 기타 내밀한 인간관계들에 관한 가족 내적 에토스가 생산적 결정을 관장하는 사회적 에토스보다 더 용이하게 제도화될지는 상당한 의문거리이다. 가족 내적 에토스는 사회적/평등주의적 에토스보다 더 깊게 인간 성격과 성격의 내적 동기적 작동에 침투해 있으며 순전히 외적 행태에 덜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에 에토스 형성에 관한 충분한 도덕적 정치적 합의가 존재한다면 현실적으로 평등주의적 에토스를 제도화하는 “학교나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적 캠페인”의 다양한 형태들이 존재한다.

구하는 것이다(xviii). 결과적으로 필자를 비롯한 일부 독자들은 차등 원칙의 견실한 집행에 대한 관심은 뒤편으로 물러난 느낌을 갖게 된다).

공공성에 관한 지금까지의 논의결과는, 한 사회가 공적 정당화와(정보) 검색 가능성을 가진 정의의 개념을 구현하는지의 여부는 정도의 문제이며 평등주의적 에토스가 잘 확립된 사회는 롤즈적인(단지 공적 규칙으로) 잘 정돈된 사회보다 이 점에서 필연적으로 열등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서 분배적 갈등의 여지가 더 적기 때문에 Cohen적인 사회가 롤즈적 사회보다 더 지속 가능할 것이라는 가정도 완전히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Cohen 적인 평등 사회가 자신들이 기꺼이 수용하지 않는바 과도한 요구들로 점철된 의무를 일부 구성원들이 어쩔 수 없이 떠맡는 사회가 아님에 주목하자. 평등주의적 에토스의 효과적 작동은(예를 들어) 위반사항을 감시하고 제재하는 비용을 절약함에 의해서 (타산적인 개인들에게서)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하는 다양한 문제들(coordination problems)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공적 정의감을 훌륭하게 보조할 것이다.

우리는 평등주의적 에토스를 롤즈적 정의감과 근본적으로 절단된 것 혹은 그것의 외적 부차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Cohen적인 에토스의 더 적절한 이해는 그것을 정의감이 규범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자연스럽게 확장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안정성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정의감의 역할에 관한 다음의 롤즈의 언급을 고려해 보자: “어떤 정의 개념이 주로 야기하는 정의감이 더 강하고 와해적인 경향들을 더 잘 억제할수록, 그리고 그것이 허용하는 제도들이 부정의하게 행위하려는 충동과 유혹들을 약하게 만들수록 그 정의 개념은 다른 것보다 더 안정적이다”;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정의감 혹은 자신들의 의무 불이행으로 손해를 보게 될 사람들에게 대한 배려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더 좋게는 둘 다 가지는 것이다.”(*Theory*, 454/398, 497/435) 이제(일부 롤즈 옹호자들이 그러하듯이) 우리가 “공적이고” 강제적 규칙과 제도에 너무 과도하게 주목하는 경향을 극복한다면, Cohen적인 에토스가 롤즈적 정의감을 깊게 하면 생겨나는 자연스런 결과라는 가정은 설득력을 얻게 될 것이다.



만일 안정성이 내재적 가치를 갖는다고 해도 오직 한 사회가 합당한 정도로 정의로운 경우에만 그 가치를 가질 것이다(내재적 가치와 조건적 가치들은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다). Cohen 적인 에토스는(공적 영역에서의 정의감과 더불어) 이러한 의미에서의 안정성에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반대로, 우리가 안정성 자체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단지 하나의 실용적 고려를 대변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것은 다른 고려들에 의해 유보될 수도 있을뿐더러 때로는(안정성만을 위한 추구는) 적극적으로 억압적인 결과들을 산출할 수도 있다.<sup>34)</sup>

#### 4. 외적 롤즈 비판(external criticism)으로 이해된 Cohen의 입장

지금까지의 논의는 롤즈의 틀, 특히 차등의 원칙을 받아들이고 그 원칙의 적용방식을 비판하는 것이 Cohen의 목표라고 전제하고 진행되었다. Cohen이 이점을(텍스트에서) 몇 번 암시했기에 이 전제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그의 롤즈 비판에 관한 적절한 기술로 보인다. 그러나 필자에게는 Cohen의 롤즈 비판의 논조가 어딘지 내적 비판 이상을 지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Cohen 자신이 롤즈에 대한 자신의 유인(incentives)과 관련된 비판을 롤즈가 수용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은 “롤즈가 [나의] 노선을 취한다면 롤즈의 자유주의가 위태로운 지경에 빠지게 될 것임을 깨닫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 경우 [롤즈는] 급진적인 평등주의적 사회주의자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If You're an Egalitarian*, 209/주 1). Cohen이 롤즈에 대한 내적 비판자인지 외적 비판자인지는 Cohen이 마음에 두고 있는 “급진적인 평등주의적 사회주의”의

34) Cohen과 롤즈 옹호자들 사이의 논쟁에서 공공성 논증과 안정성에 관한 논의로는 Vandenbroucke(특히 VIII장)를 참조할 것. 그의 결론은 필자와 유사하지만 그 결론에 도달하는 방식은 같지 않다.

내용에 관해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어야 결정이 날 것이다. 이 자리에서 그것을 추구할 수는 없기에, 필자는 외적 비판의 여지를 시사하는 몇 가지 사항들만을 제시하려 한다.<sup>35)</sup>

Cohen이 지향하는 분배적 형태인 D3은 두 가지 다른 방식들로 기술될 수 있다: 첫째는(D1, D2, D3 중에서) **최소수혜자의 처지가 극대화된 분배**라는 기술이고, 둘째는(D1보다 높고 “특수한 부담”이 감안된 상태에서) **평등 분배**라는 기술이다. 첫째 방식으로 이해된다면 Cohen의 비판은 내적 비판으로 볼 수 있다. D3은 평등 분배이지만 차등의 원칙의 maximin 부분을 가장 잘 만족하는 수단으로 제출된다. 차등의 원칙은 maximin에 대한 효과에 기초하여 불평등을 허용하는 원칙이지만, Cohen은 maximin 자체를 가능한 한 높은 수준에서 성취하려면(우연히도 현실적으로는) 평등이 가장 적절한 분배상태로 떠오른다는 주장을 한 셈이다.

롤즈에 대한 Cohen의 비판은 차등의 원칙의 maximin 부분을 이미 수용한 사람들에게 논의 주제로 던져진 섹채를 띠고 있다. 이점이 내적 분규의 분위기를 산출한다. 그러나 모두가 그 원칙을 **같은 이유로** 수용한 것은 아닐 것이다. 더군다나 모든 사람들이 maximin의 분배상태에 머물고자 하지도 않을 것이다

---

35) 롤즈에 대한 외적 비판자로서의 Cohen에 대한 이해는 Cohen의 평등(주의) 개념이 보다 일반적으로 기술된 방식(luck egalitarianism의 한 유형)과도 연관된다. 그 방식은 maximin을 정의 자체로 보는 입장과 잘 유효되지 않는다(아래의 주 38 참조; 또한 모든 선택되지 않은 차이들을 분배적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오직 취향과 선택에 의한 차이만을 용인하는 “사회주의적 기회평등”의 개념이 제시된 그의 글 “Why Not Socialism?”도 참조할 것). 물론 행운(luck)에 의한 차이를 메우는 것을 지향하는 평등주의도 다양한 형식으로 제시될 수 있지만 — 동등한 분배 자체보다는 낮은 층에 돌아가는 몫에 가중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우선성을 할당하는 방식(Ameson의 최근 입장)도 있을 수 있음 — **Cohen 식의 (luck) 평등주의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이다(필자는 내적 비판으로 이해되어도 그 자체 타당하고 롤즈 옹호자들이 수용해야 하는 국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의 문헌에 기초하자면** 내적 비판이 보다 적절한 해석이기 때문에 내적 비판을 논의한 것이다).

(이는 사람들이 차등의 원칙 혹은 maximin을 받아들인 이유에 의존할 것이다). 필자는 도덕적 임의성 명제 — 사회적, 자연적 우연적 조건들이 분배에서 도덕적으로 힘을 발휘해서는 안된다는 명제 — 가 Cohen이 (차등 원칙의) maximin을 수용한 배후에 있다고 믿는다. 이 명제에 근거하여 Cohen은 재능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재능이 산출한 것을(“특수한 부담”이 감안된 후에) 재능이 없는 사람들에게 전이할 것을 요청할 수 있었다. 평등한 분배가 도래하는 지점까지 말이다. 이 지점에서 maximin이 획득되었지만, 더 근본적으로 분배 상태는 오직 사람들의 도덕적으로 관련성이 있는/비우연적인 특질에만 반응하게 되었다. 노동과 여가 사이의 비율을 정하는 것을 포함하여(통제 가능한) 취향과 선택을 행사하는 것과 함께, “특수한 부담”이 있는 어떤 직업 활동에 참여할 것인지에 관한 개인의 결정은 도덕적으로 관련성이 있는(비우연적) 영역에 속한다. 재능있는 사람들이 진 “특수한 부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유인들은 사실상 “불평등”을 발생하지 않으며, 오히려(그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평등 기준에서 멀어질 수도 있는 장력을 “상쇄하여 평등을 회복하는 기제(counterbalancing equalizer)”이기 때문에 합당하고 정당하다는 Cohen의 주장은<sup>36)</sup> 부담이 감안된 평등(burden-adjusted equality)이 최소한 하나의 독자적 규범적 이상임을 시사한다.

물론 도덕적 임의성 명제도 롤즈의 정의론의 일부이다. 이것이 롤즈가 분배에서 우연적 요소들의 영향이 남아 있는 자연적 자유(natural liberty)와 자유주의적 평등(liberal equality) 체제를 공격할 때 거론한 근거이다. 그러나 그가 허용되는(혹은 의무적으로 도출되어야 하는) 분배상태들에 관한 적극적 기술을 할 때 도덕적 임의성 명제는 호혜성의 명제 자체로 흡수되어 자취를 감추게 된다. 롤즈적 호혜성(reciprocity)의 개념에 따르면 최소수혜자층에게 돌아가는 최종의 공정한 몫을 결정하는 것은 항상 다음의 복잡한 체계적 고려사항들이다: 우선성의 위계로 관련된 다수의 원칙들, 현존하는(시장을 지배하는) 에토스들, 결과적인 유인들의 양 등.<sup>37)</sup> 더 혜택을 받은 사람들의 생산적 재능 행사

36) “Incentives,” 363; “Pareto Argument,” 173.

와 그들이 수용한 유인들에 의해 최소수혜자의 처지의 절대적 수준이 향상되어야 하지만, 그 이외에 롤즈에게는 협력적 체계 구성원들이 가진 바 일부 분배적으로 관련성이 있는(즉 임의적이 아닌) 특질들에 기반한 그 어떤 독립적 분배기준이란 없다. 이는 공정 분배에 관한 롤즈의 호혜성/체계에 기반한 고려와 Cohen의 부담이 감안된 평등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증시한다(물론 Cohen 측에서도 평등 이외의 다른 가치들이 나중에 도입될 수 있으며, 그 지점에서 정의로서의 평등과 다른 가치들 사이에 조정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생산적 재능이 행사된 결과 산출된 것들의 이전이 가능한 대부분의 현실적 경우들에서 D3은 Cohen의 규정대로라면 유일하게 “정의로운 분배”가 될 것이고,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보상의 특정 평등주의적인 **프로파일**(a certain egalitarian profile of rewards)”이다(*If You're an Egalitarian*, 131-32; 첨가된 강조). 이러한 “정의로운 분배”에 해당하는 분배적 형태에 대한 기준은 바로 그것이 노동의 부담의 양(그리고 다른 일부 선택된 취향상의 차이들)만을 추적해야 하고 자연적 사회적 우연적 요소들에 반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롤즈적인 순수절차적 정의 개념을 거부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Cohen의 “정의로운 분배” 혹은 그 프로파일은 단지 그 구체적 형태가 어떻든지 간에 이미 설정된 “공정한” 절차를 거치는 모든 분배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

37) (특히 후기) 롤즈에게서 호혜성의 개념은 하나의 기술적(technical) 개념으로서 다음의 복잡한 요소들로 구성된다: 그것은 협력적 체계 안에서 그 체계의 규칙들이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시민들 사이의 관계이다. 그 관계는 도덕적 개인으로서 모든 이들이(자유롭고) 평등하기 때문에 분배적 정의의 수준점은 평등이라는 생각에 부분적으로 기초한다. 더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재능을 갖고 행사하는 것을 누릴 때 이미 복을 더 많이 받은 것이므로 “더 이상의 혜택”을 획득하는 것은 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의 작업으로부터 이득을 받는 경우에 한한다. 재능있는 사람들의 작업 수준, 그들에게 가는 보상의 수준은 각종 유인들을 제공하는 사회와 그 유인들에 반응하는 재능 있는 사람들에 의해 합동으로 결정된다. 사회의 기본 구조는 차등의 원칙을 포함한 롤즈적 정의 원칙들을 만족하는 목표를 염두에 두고 그 유인들의 양을 조정해야 한다(*PL*, 16-17, *JF*, 49, 64, 76-77, 124).

롤즈가 차등의 원칙이 허용하는 불평등의 그 어떤 “규정된(specified)” “확정적 한계(definite limit)” 혹은 “전반적 형태(overall shape)”를 인정하지 않은 반면에 Cohen의 입장은 분배형태들이 D3과 유사한 프로파일로 가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sup>38)</sup> Cohen의 경우 이 점에서 평등한 형태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의로운 분배”에서 탈락하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정의 여부를 알기 위해서 이 분배형태를 다른 것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sup>39)</sup>

혹자는 롤즈의 차등의 원칙에서도, 단지 “공정한 과정을 작동하게 하고 어떤 [분배형태가] 결과로 나오는지만을 지켜보자”는 식의 절차주의 이상의 분

---

38) Cohen의 롤즈에 대한 가장 심층적 비판은 롤즈가 바로 부당한 격차의 해소/축소 자체에 분배정의의 핵심을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평등주의의 이상에 못미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현실적 경우에서(Cohen의 평등주의의 관점에서) maximin이 옳은 혹은 최선의 정책일 가능성이 많다. 그것은 최저계층의 생활수준 자체의 열악함 때문이기도 하고, 대개의 경우 maximin이 실제로 격차를 줄이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유방임이 아니라 maximin을 위해서 재분배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롤즈의 ‘평등주의적’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Cohen에 의하면 최선의 정책인 maximin이(부당한 격차의 제거라는 의미에서의 ‘부담’이 감안된) 평등에서 멀어진다면, 그것은 동시에 분배적 정의에서 멀어지는 것이다. 필자에 보낸 서신에서 Cohen은 이것이 자신의 근본적 정의관과 일치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점에서(평등으로서의 정의 이외의 가치들도 있음을 인정하지만) 평등을 정의 자체로 보는 Cohen과 복합적 다수원리들의 위계적 체계가 추구되는 것을 정의로 보고(경제적 혜택의) 평등 자체에 내재적 가치를 두지 않는 롤즈 사이에는 커다란 격차가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것이 “단적으로 롤즈는 평등주의자인지 정의론자인지를” 묻는 질문(『인문논총』한심사자의 질문에) 대해 암시적 답을 준다고 보인다.

39) D3형태를 가진 분배들 중에서 Cohen은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것을 유일하게 정의로운 분배로 여길지도 모른다(다시 한번, 우리는 평등 이외에도 어떤 다른 규범 혹은 소망사항들이 Cohen에 도입되는 지점과 강도를 알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판단은 현존하는 기술의 수준과 개인들의 생산적 능력에 의존할 것이며, 이러한 사실의 확인은 각종 유인 메커니즘과의 협상을 포함하는 롤즈적 과정들과 독립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배기준이 있다고 여길 수도 있다: 즉 최소수혜자의 몫이 극대화되어야 한다는 기준이 그것이다.<sup>40)</sup>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는 정의로운 분배에 대한 롤즈의 체계중심적, 전체론적(holistic) 고려방식을 만나게 된다. 모든 것은 우선성으로 엮어진 복잡한 원칙들의 만족, 그리고 수용 가능한 유인의 양에 대해 재능있는 사람들이 가진 기존 성향에 의존한다. 이 성향은 제공된 유인들의 양과 그들의 자기-극대화적인 에토스의 강도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우리는 그 에토스의 상이한 강도를 지닌 두 체제들 사이에서 최소수혜자의 처지의 절대적 수준을 비교하고 그 차이를 판정할 수는 있겠지만, 그 어떤 롤즈적 의미에서 “정의로운” 분배가 최소수혜자의 처지를 진정 극대화하는지를 확언할 수는 없다. 그 분배가 항상 선행 원칙들과 유인들 그리고 기존의 에토스 사이에서 균형을 추구한 결과이기 때문이다.<sup>41)</sup>

## 참고문헌

Anderson, Elizabeth(1999), “What Is the Point of Equality?” *Ethics* 109.

Arneson, Richard(1989), “Equality and Equal Opportunity for Welfare,” *Philosophical Studies* 66.

40) Murphy, “Demands of Justice,” 287.

41) 평등에 관해서 필자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고 있는 한림대 철학과 장춘익 교수, 지난 3년간 현대 평등(주의), 그리고 관련된 정치철학적 논점들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이 논문이 포함된 더 커다란 작업에 논평을 해 준 UC-San Diego 철학과 Richard Arneson 교수, 자신의 견해에 대한 필자의 이해를 지지해주고 의견을 보내 준 G. A. Cohen 교수, 그리고 이 글의 초고가 발표된 <경제철학집담회>(서울대)에서 다양한 논평을 해준 선생님들과 인문논총 심사자들의 질문에 감사한다. Cohen 교수는 앞으로 간행될 그의 책 *Rescuing Justice and Equality*(가제)에서 롤즈 옹호론에 답하면서 외적 비판으로 재구성된 그의 견해를 체계적으로 보여주게 될 것이다.

- \_\_\_\_\_ (1990), "Primary Goods Reconsidered," *Nous* 24,
- \_\_\_\_\_, "Rawls, Responsibility, and Distributive Justice," in M. Salles & J. Weymark, eds. *Justice, Political Liberalism & Utilitarianism: Themes from Rawls and Harsanyi*, Cambridge Univ. Press, forthcoming.
- Atkinson & Bourguignon, (eds.)(2000), *Handbook of Income Distribution*, Elsevier.
- Ben-Ner, Aver & Putterman Louis, (eds.)(1998), *Economics, Values, and Organization*, Cambridge Univ. Press.
- Bowles, Samuel & Gintis, Herbert(1998), "Efficient Redistribution: New Rules for Markets, States and Communities" in E. O. Wright, ed. *Recasting Egalitarianism*, Verso.
- Carens, Joseph(2003), "An Interpretation and Defense of the Socialist Principle of Distribution," *Social Philosophy & Policy* 20.
- Cohen, G. A.(1989), "On the Currency of Egalitarian Justice," *Ethics* 99.
- \_\_\_\_\_ (1995), "Incentives, Inequality, and Community,"(1993) rep. in S. Darwall, ed. *Equal Freedom*, Michigan Univ. Press.
- \_\_\_\_\_ (1995), "The Pareto Argument for Inequality," *Social Philosophy and Policy* 12.
- \_\_\_\_\_ (2000), *If You're an Egalitarian, How Come You're So Rich?* Harvard Univ. Press.
- \_\_\_\_\_ (2001), "Why Not Socialism?" in E. Broadbent, ed. *Democratic Equality: What Went Wrong?* Univ. of Toronto Press.
- Daniels, Norman: "Rawls's Complex Egalitarianism," in S. Freeman, ed.
- Estlund, David: "Liberalism, Equality, and Fraternity in Cohen's Critique of Rawls," *Journal of Political Philosophy* 6, 1998.
- Freedman, Samuel (ed.)(2003), *The Cambridge Companion to Rawls*, Cambridge Univ. Press.
- Julius, A. J.(2003), "Basic Structure and the Value of Equality," *Philosophy & Public Affairs* 31.

- Krugman, Paul(1992), "The Right, the Rich, and the Facts," *American Prospect* 11, Fall.
- \_\_\_\_\_ (2003), "The Tax-Cut Con," *The New York Times* Sept 14.
- Lindert, P. H., "Three Centuries of Inequality in Britain and America," in Atkinson & Bourguignon, eds.
- Mandle, Jon(1997), "Justice, Desert and Ideal Theory," *Social Theory and Practice* 23.
- Meckled-Garcia, Saladin(2002), "Why Work Harder?" *Political Studies* 50.
- Moriarty, Jeffrey(2002), "Desert and Distributive Justice in *A Theory of Justice*," *Journal of Social Philosophy* 33.
- \_\_\_\_\_ (2003), "Against the Asymmetry of Desert," *Nous* 37.
- Murphy, Liam B.(1999), "Institution and the Demands of Justice,"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27.
- Parfit, Derek(1998), "Equality or Priority?" in A. Mason, ed. *Ideals of Equality*, Blackwell.
- Pogge, Thomas(2000), "On the Site of Distributive Justice: Reflections on Cohen and Murphy"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29.
- Przeworski, Adam, et al.(2001), "What Makes Democracy Endure?" in L. Diamond & M. F. Plattner, eds. *The Global Divergence of Democracies*, Johns Hopkins Univ. Press.
- Rawls, John(1999), *A Theory of Justice*(1971) rev. edn., Harvard Univ. Press.
- \_\_\_\_\_ (1993), *Political Liberalism*, Columbia Univ. Press.
- \_\_\_\_\_ (2001), *Justice as Fairness: A Restatement*, Harvard Univ. Press.
- Scheffler, Samuel(2003), "What is Egalitarianism?"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31.
- Sen, Amartya(1992), *Inequality Reexamined*, Harvard Univ. Press.
- Shaw, Pat(1992), "Rawls, the Lexical Difference Principle, and Equality," *Philosophical Quarterly* 42.
- \_\_\_\_\_ (1999), "The Pareto Argument and Inequality," *Philosophical Quarterly* 49.



- Smith, Paul(1998), "Incentives and Justice: G.A. Cohen's Egalitarian Critique of Rawls," *Social Theory and Practice* 24.
- Vandenbroucke, Frank(2001), *Social Justice and Individual Ethics in an Open Society: Equality, Responsibility, and Incentives*, Springer-Verlag.
- Van Parijs, Phillippe, "Difference Principles," in S. Freeman, ed.
- Wilkinson, T. M.(2000), *Freedom, Efficiency and Equality*, Macmillan.
- Williams, Andrew(1998), "Incentive, Inequality, and Publicity,"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27.

원고 접수일: 2005년 4월 15일

게재 결정일: 2005년 6월 8일

**ABSTRACT**

---

## Problems of Rawls from the Egalitarian Perspective

Choo, Dong-Ryul

Contrary to Rawls, G. A. Cohen does not think that the basic structures, major public institutions including ones that govern tax and transfer, are the only effective and legitimate mechanism through which egalitarian distribution is achieved. According to Cohen, egalitarianism needs a distinctive kind of 'ethos' that guides personal choices and behavior as well as the disposition to observe relevant public rules. Especially, for the optimal realization of its Difference Principle, Rawlsian justice simply needs what Cohen calls an egalitarian ethos, a pervasive motivational ground in everyone, but especially in talented people. When this ethos prevails, the latter would maintain high productivity and willingly agree to a redistribution that would restore economic equality on a higher level than the initial equality (Rawls' "benchmark" of justice). They would not demand economic incentives for the activation of pure talent out of their strategic bargaining, letting the others (the untalented) have only relatively small part of the expanded output ("trickle-down effect"), thereby creating and deepening an unequal distribution.

This paper has three aims. First, it attempts to clarify the nature of Cohen's criticism of Rawls. I think that there is an eminent possibility that Cohen's criticism

of Rawls belongs to the category of “internal criticism.” An internal criticism of Rawls will keep all or most of the major Rawlsian principles intact, while denying some of Rawls’s minor principles, predictions, and assertions concerning implementation of his principles. Not only are there some textual grounds for this interpretation, but Cohen’s discussions are clearly conducted in the Rawlsian spirit, without being directly informed by Cohen’s views on the other matters of equality, his discussions of the proper currency of egalitarian justice and his version of luck egalitarianism.

Second, I indicate certain mistakes in some defenses of the (untainted) Rawlsian frame against Cohen’s charges. I argue that if the “internal” reading of Cohen’s engagements with Rawls is correct, and if Cohen’s suggestions in this regard are independently defensible, Rawlsians should accept them. Their resistance to Cohen’s internal criticism may be prompted by their mistaken views about the flexibility of the Rawlsian frame or about the way Rawls’s principles apply to the real world.

Lastly, I briefly point to a particular way Cohen’s concerns go beyond the Rawlsian frame and can be connected to other views of equality Cohen has been advocating. Without trying to adjudicate upon the confrontation of Rawls’s with Cohen’s systematic egalitarianism (partly because the latter is not given yet at the moment), I will just allude to some distinctively un-Rawlsian features of this version of Cohen’s view.

